유형･무형자산 또는 의료 해외진출 지출액 연구개발사업 ㉠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㉡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㉢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 사업 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